

노무법인 로울

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, 1802호 (공덕동, 르네상스타워)

Tel 010) 2890-7948, 02)713-2022 Fax 0303) 3444-2025

smilejhjh@hanmail.net

2026. 8. 18.

■ 제 목 :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안내

■ 내용

최근 개정된 「산업안전보건법령」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■ 위험성평가의 의의

“위험성 평가”란, 사업주가 업무로 인한 유해 · 위험 요인을 찾아내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,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·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(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).

특히, ① 최근 제정된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은 “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)를 이행하지 않은” 사업주 ·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령인 점(중대재해처벌법 제6조), ② 위험성평가는 “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”의 핵심 절차인 점에서 최근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

■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 내용

1.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

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이 개정되어,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.

(단위 : 만 원)

위 반 행 위	1 차	2 차	3 차
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	500	700	1,000
근로자 ·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	150	300	500
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	150	300	500
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· 보존 의무 위반	50	150	300

※ 해당 법령은 '27년 1월 1일 시행되며,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'28년 1월 1일 시행됩니다.

2.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

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① 안전보건관리체제,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,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, 해당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, ④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, ⑤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.

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해당 법령은 '26년 8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.

3.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

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.

■ 참고사항

본문에서 안내드린 “위험성평가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)”와 관련하여, 노무법인 로울은 정부 위촉을 받아 120여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.

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■ 연락처

황지호 대표 공인노무사

휴대전화 : 010 - 2890 - 7948

사무실 : 02 - 713 - 2022

이메일 : smilejhjh@hanmail.net